

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주택조합 변경(11차)인가 공고

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371-24번지 일원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택조합 변경(11차)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0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22.

화 성 시 장

1. 주택조합 설립(변경)인가 현황

조합명칭	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(대표자: 박선준)		
조합소재지	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로920번길 12, 307호		
조합설립 인가일	2021. 2. 4.		
주택건설대지 위치	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리 371-24번지 일원		
조합원 수	2,481명	건설예정세대수	3,060세대
대지면적	171,106㎡		
토지확보율	사용권원 88.63% (151,644㎡) 소유권 82.04% (140,379㎡)		
건설예정기간	2026. 2. 27. ~ 2029. 12. 31.		
변경내용	조합임원 변경		

2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(☎031-5189-630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